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형동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1306
----------	-------

발의연월일 : 2025. 7. 7.

발의자 : 김형동 · 박상웅 · 조경태  
우재준 · 한지아 · 김미애  
김석기 · 윤상현 · 박정하  
이종배 · 김상훈 의원  
(11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본사 또는 공장을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하여 일정한 기준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하도록 하고 있는데 그 일몰기한이 2025년 12월 31일까지임.

그런데 수도권 과밀화 해소 및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본사나 공장 등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계속할 필요가 있음.

이에 수도권 밖으로 본사 또는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 감면특례의 일몰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4년 연장하려는 것임 (안 제63조 및 제63조의2).



법률 제 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5년 12월 31일”을 각각 “2029년 12월 31일”로, “2028년 12월 31일”을 “2032년 12월 31일”로 한다.

제6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2025년 12월 31일”을 각각 “2029년 12월 31일”로, “2028년 12월 31일”을 “2032년 12월 31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하다.

1. ~ 3. (생 략)

② ~ ⑦ (생 략)

----.

1. ~ 3. (현행과 같음)

② ~ ⑦ (현행과 같음)